

보도시점 2024. 5. 14.(화) 12:00 (2024. 5. 15.(수) 조간) 배포 2024. 5. 14.(화) 09:00

특구 내 효율적 기업, 연구 공간 활용을 위한 「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」 개정안 공포

- 국토계획법 특례(건폐율, 용적률 상향), 경미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 등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장관 이종호, 이하 '과기정통부')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('23.11.2, 대전), 제12회 민생토론회('24.2.16, 대전)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의 교육,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,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(이하 '연구개발특구법') 시행령」 개정안이 5월 14일(화) 공포되어 8월 15일(목)부터 시행*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* 경미한 특구변경 간소화, 특구 내 허용건축물 추가 등은 5월 14일(화)부터 시행 예정

이번 시행령 개정은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추진해 온 연구개발특구*(이하 '특구') 교육,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(건폐율, 용적률)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,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는 한편 특구 내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.

* 대학, 연구기관, 기술사업화 기업 등을 집중 배치하여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성과 확산,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(舊 대덕연구단지가 전환, 확대된 개념)

「연구개발특구법」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특구 내 연구,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「국토계획법」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%에서 200%로 상향한다.

* 건폐율 (기존) 30% → (변경) 40%, 용적률 (기존) 150% → (변경) 200%,

교육,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은 대학, 출연연, 연구소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고, 구역 내 토지의 대부분이 이미 개발되어 신규 개발이 어려운 상황으로, 입주 기업, 연구기관 등에서 건축밀도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. 이번 건폐율, 용적률 상향으로 특구 내 연구기관, 창업 및 중소기업은 고밀도 건축 또는 증축을 통해 원활한 연구 및 기업 활동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.

* 향후 연구개발특구법 제44조 개정을 통해 건폐율, 용적률 상향으로 안전,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 추가 예정

둘째,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. 특구개발사업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등 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특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구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.

셋째, 특구 내 교육, 연구, 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 확대한다. 특구 내 연구기관·기업 종사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,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금융업소,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추가하고, 산업육성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데이터센터를 추가한다.

담당 부서	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 지역과학기술진흥과	책임자	과 장	고정호 (044-202-4740)
		담당자	사무관	이정수 (044-202-4744)

